

제42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19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외교부 소관
 - 통일부 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재외동포청 소관

상정된 안건

- 2024회 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
 - 외교부 소관
 - 통일부 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재외동포청 소관

(10시06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초로 외교부, 재외동포청,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서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절차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의 항목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치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10시08분)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박윤주 외교부1차관께서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지적사항들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의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결산에 대해서 모두 57개 사항에 대해 77건의 시정요구가 제시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으로 한 7개 정도 그룹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1번, 세입 관련입니다.

외교부는 2024년도 관유물대여료 예산액을 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나 10.5%만이 수납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관유물대여료 수납률 제고를 위해 산정기준을 고도화하고 세입 추계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은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입니다.

집행률 부진의 지속과 2024년도 높은 불용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외교부는 북핵수석대표 활동 목표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용성을 확보하는 등 북핵 문제 대처 사업의 장기 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 구조와 운영 절차를 재정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2쪽의 3번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의 반복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 및 기대 성과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 내역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 중 내역사업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와 한-인도 카라반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것인데 그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3쪽 5번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들이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들의 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성을 감안하여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에 대하여 특정 내내역사업들의 연계적 부진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외교부는 저성과 내내역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통합하고 성과지표를 상향할 것이라는 것과 둘째, 외교부는 향후 유럽지역 역내 정세 변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연도별 집행 가능성은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것입니다. 유형은 각각 시정과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7번 외교부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별 개황 책자 디자인 및 발간 용역 사업을 전용 등을 통하여 집행한 데 대하여 외교부는 향후 사업 추진 전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8번 한·아프리카재단의 결산보고서상 감사의견서 미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의 감사 임명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재단이 감사역 등 내부 감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 운용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5쪽 9번 한·아프리카재단의 특근매식비 배정액 및 집행액이 총 4만 원에 불과한 바 시정요구사항으로 외교부는 재단이 특근매식비 제도 관련 직원 대상 안내 강화 및 내부 운영지침 정비, 실제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기준 마련, 유사 기관의 운영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 집행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 사업의 집행 부진 관련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단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강연회 일정 및 협업 방식의 조기 확정, 수요 기반의 예산편성 등 체계적인 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까지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1차관 박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위에서 또 뛰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은 오늘 2024회계연도 외교부 결산소위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4번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의 경우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을 5번과 동일하게, 시정·제도개선 중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사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후덕 위원** 아니, 됐어요. 제도개선 좋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도 설명한다는데 잠깐 듣고……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5번 지적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세부사업은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내역사업의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체계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입니다.

6번 사업 관련해서 6번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사유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인 2020년 그리고 2021년 내내역사업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유는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각국과의 외교활동에 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대외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 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리면 7번이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7번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4번하고 6번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7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건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건 위원** 먼저 질문이 좀 있어서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대처 사업 효용성 확보 관련해서 이게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본부장이 출장을 안 가서 그런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기본적으로 북핵수석대표, 차석대표들이 각국에서 외교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외교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북핵수석대표가 누군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은 24년의 경우에는 북핵수석대표가 장기 공석이 됐었고 지금으로서는 한반도본부장이신 거지요.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직제가 바뀌었으니까 외교전략정보본부장입니다.

○**김건 위원** 24년에 왜 장기 공석이 됐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24년 당시에,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장기 공석이고 조직 개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공석이었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건 위원 그래서 하여튼 불용이 났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예산을 절약한 게 아니라 예산이 불용이 난 것은 일을 안 한 거라고밖에 평가 못 받는 거니까 이런 불용률을 갖고 오면 항상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면 9번에 한·아프리카재단 특근매식비 얘기인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직원들이 시간외수당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것 약간 너무 테크니컬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금……

○김건 위원 관련 부서에서 답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한·아프리카재단의 상근이사로 있는 감운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일단 특근을 하기 위해서는 30분의 공제를 하게 됩니다. 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중에 30분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치기 때문에 직원들이 30분 공제를 하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그냥 가서 집에서 밥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초과근무를 2시간을 하면 1시간 반만 인정해 준다는 뜻인가요?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3시간을 하면요?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마찬가지로 3시간을 하는데 특근매식비를 사용하게 되면 2시간 반을 근무한 걸로 치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합니까?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더 랍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원래 애초에 특근매식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마다, 예를 들어 외교부 같은 경우는 특근매식비를 따로 공제하지는 않고 2시간 이상을 특근을 해야지 그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아프리카재단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일단은 30분을 공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를 특근매식비에서 까고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30분 공제받는 걸 직원들이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초과근무수당을 덜 주려고 제도를 이렇게 설계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액이 작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외교부 기조실장님!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조정기획관 문인석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지금 아프리카재단에 예산을 덜 줘서 그런 거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그런 측면보다는 정부 전체적으로, 아마 국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려 나가시면 그 식사 시간 동안은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특근매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은 밥을 먹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에 밥 먹는 시간은 얘네들이 일하지도 않는데, 당신들 일하지 않는데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 아니냐.

○**소위원장 김영배** 이중 지급이다?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예,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외교부도 지금 그런가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기관 다 그렇다고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예,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2026년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개선해서 반영을 했어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그것은 결국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 같은 경우에는……

○**윤후덕 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바로 잡았냐고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특근매식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자라지 않도록 기재부에서 받은 예산 내에서 충분히 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6년도 예산에, 정부안에 기본경비가 완전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는 대로 충분히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그런데 사실은 돈이 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윤후덕 위원** 알았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상근이사 감운안** 허락하시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됐습니다. 됐고요.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수석전문위원께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이 자료를 잘 만들어 줬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가지고 지적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퍼센티지는 나오는데 이 내역사업이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제시해 놓지 않으니까 이 금액이 1000억이 집행이 안 됐는지 10억이 집행이 안 됐는지 또는 1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지 여기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시를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저희가 워낙 축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유념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4번의 경우는 이게 17%, 31%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게 액수로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집행된 게 얼마가 집행이 된 거지요? 1억 단위 미만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한-인도 카라반 사업 같은 경우에는 8200만 원이고요.

○**소위원장 김영배** 전체 사업비가?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1억 미만이네. 그중에 집행된 게 실제로 몇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집행이 됐다 그 말이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대서남아 파트너십 확대 사업도 82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총액이?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김영배** 사업비 자체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집행액이 그래서 대서남아는 1400만 원, 한-인도는 2600만 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이게 아까 외교부차관께서 뒤에 5번하고 아태 교류 협력 강화, 그 뒤에도 따지고 보면 유럽과의 협력 강화 이 영역도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4번하고 5번을 같이 제도개선을 하면서 사업의 목록을, 구조를 새로 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것은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이게 앞에 4번이, 이렇게 대서남아하고 인도 출장을 잘 못 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신경을 안 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럽 하느라고 했나? 뭐 어디 하느라고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2라는 게 사실은 외교·국방을 다 묶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계기에 카라반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못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서남아는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게 서남아 관련 사업입니다. 대서남아 파트너십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카라반 사업 자체를 대서남아 파트너십 사업으로 통합을 해 버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이재정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정 위원** 서면으로 지적한 내용 이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연번 7번 관련해서 이미 지적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외교부는 국가별 개황자료 발간계획 따로 수립하지 않고 수교 정주기나 외교 계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은 했지만 실제 제가 지적했다시피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는 이미 예고된 일정이고 개황자료 수요도 충분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을 때 타 사업 예산을 충당해 버리면 이게 근본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거든요.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 기회 요청드렸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요 보다 높은 단계인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7번은 주의로 정리를 하고요. 4번하고 6번을, 4번은 5번과 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이 전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신남방·신북방을 새 정부가 다시 중요성을 두겠다 이렇게 업무계획에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뿐만 아니고 서남아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설계가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4번도 제도개선으로 해 드릴 테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신남방·신북방 이렇게 지금 제시된 업무 구조를 잘 설계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유럽국가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교류 협력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코로나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코로나 말씀을 하시지요?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 때 NATO하고 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유럽하고 이렇게 낮은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대통령이 NATO를 두 번 가셨나요? 그렇게 했는데 유럽하고 이렇게 낮다는 게 좀 엇박자 같은데.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게 집행률이 그 전에도 낮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집행률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런데 여전히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이 집행률 사이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한 국가와만 교류 협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미 계획된 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게 보면 중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또 유라시아지역 국가들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차지호 위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일단은 기본적으로 러시아하고는 좀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제재라는 게 있고 또 우크라이나도 전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업을 실시하기가 여건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차지호 위원 유럽지역의 국가들이 교류 협력을 하는 정부의 기능들이나 아니면 민간 섹터들은 그대로 기능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냥 통쳐서 다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이유가 맞지 않은 것 같네요. 그 국가들이 지금 정상적인 기능들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민간이나 공공 교류들은 다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외에 다른 국가들과 교류 협력의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 국장 설명 조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시지요.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조정기획관 문인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예를 들어 저희가 비세그라드4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형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형가리와 슬로바키아가 폴란드, EU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V4 협의 자체가, 한-비세그라드4 협의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흑해지역 경제권 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 역시 흑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소국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당초에 중앙아와 관련된 사항이 원래 유럽국 소관이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동북아국으로 중앙아 관련된 것이 또 이전이 되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제도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의 어떤 실기 이런 측면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라는 얘기 하셨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이전에도 집행률이 낮았다 이 점을 지적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대셨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만 얘기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국내외 지역, 유럽지역 전문가 아웃리치 사업을 제외하고는 계속 집행률이 저조했고, 그러니까 그 사유는 평계로밖에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사유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러-우 전쟁같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전쟁 가운데서는 더더욱 필요했고 기회를 살폈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다른 데서 찾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차관님, 왜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지난 정부가 NATO하고 관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 혹은 아니면 러시아와 관련된 일종의…… 그러니까 반대적인 그런 거지요. 그때 막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우리 다른 국정목표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NATO하고 연합을 해 가지고 군사적인 뭘 할 건지 말 건지 주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외교부의 관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EU가 지금 관세협상 마무리 지으면서 군사비, 국방비 지출 그것을 3.5% 이상으로 맞추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한편으로는 방산시장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독일이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 일종의 소다자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대통령 특사로 독일 갔다 왔는데 독일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소다자주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거꾸로 지금 자꾸 우리하고 뭘 해 보자고, 군사협력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의 시장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니즈가 이제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 자체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확실

하게 달라진 측면이 있고 새 정부가 유럽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아까 국방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략경쟁이 강화되고 EU하고 또 통상마찰이 강화되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안보의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럽, 아시아 문제도 아까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볼 때는 유럽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 바꾸라고 해서 바꾸고 이런 건 아니지만 새 정부가 정책목표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주의로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대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6번 관련해 가지고 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에 그 안에서 특정 내내역사업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특정 내내역사업의 총액이 얼마예요? 아시는 분이 좀 얘기해 보세요. 내내역사업 총액이 얼마예요?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낮은 게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률이 2024년 결산이잖아요. 집행률이 얼마나 됐는지하고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외교부는 저성과 내내역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통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우리 상임 위에서 이 특정 내내역사업은 저성과 내내역사업으로다가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예산을 할 때…… 이 내내역사업은 얼마나 편성했는지도 지금 여기서 알려 줘요. 그러면 이것 감액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에 의해서 2026년도의 이 내내역사업은 집행률에 맞춰서 감액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 국가에서는. 그러면 유럽에 가서…… 여기서는 이 내내역사업의 사업 자체가 통폐합해 버리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 여기서 실제 이런 특정 내내역사업을 아예 안 할 거예요?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일단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집행률 부분은, 금액은 아닌데 집행률은 내내역사업별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간단히 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한·러 정부 간 정례협의회 및 외교활동이 43.8%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강화가 9.2% 그다음에 민주주의·시장경제 기반 발전경험 공유 협의가 한 59.3% 정도 했고요. 남동유럽·흑해연안국과의 인사 교류가 집행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를 합치면 총 한 17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전체 집행률은 84%입니다, 크게 보면요. 그런데 내내역사업별로 보면 한 43%에서 6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9% 되는 것도 있고 집행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편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잘 배분해서, 사실은 84%가 집행된 것은 또 맞기 때문에 이 내부의 구조적인 내역 조정을 잘 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해 놨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내년 예산은 지금 예산액이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윤후덕 위원** 2025년도는 집행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특사 과정만 해도 유럽지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주의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이 상황은 제가 예산심사 할 때 2026년 예산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현재 예산이, 지금 기관에서도 이 내내역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더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은 5번하고 같이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6번도 주의하고 제도개선 이렇게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 짤 때는 내용을 잘 준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은 아까 주의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11번부터 다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6쪽입니다. 11번부터 21번까지 11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사업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필수 부대경비를 편성하지 않아 반복적인 세목 조정과 전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추진 시 행사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 비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준비 과정을 보다 내실화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번 한국 소재 국제기구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한 한국 소재 국제기구의 사업계획 대비 예산의 실효적 집행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외교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한국 소재 국제기구에 대한 기관별 성과계약서를 도입하고 분담금의 성과와 연동된 환류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7쪽 13번 2024-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하여 외교부는 사업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 예산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설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14번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진행 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면서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건비 전용 충당과 정책연구비 전액 미집행이 발

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부처 간 기능별 분담 및 세부 세출 항목에 대한 실무 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 제시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15번 ODA 국별협력사업의 예산 대비 실집행률과 예산 현액 대비 실집행률 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으로 외교부는 ODA 현장의 정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연차별 실소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조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16번 국별협력사업 중 베트남, 캐냐 등 수원국 여건 파악이나 선행절차 부족으로 인한 집행 부진 사례에 대한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별협력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법·제도 요건 및 선행절차, 현지 정세, 행정절차 소요기간,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사업 일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쪽입니다.

국별협력사업의 종료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종료연도의 ODA 사업을 면밀하게 관리 감독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고, 둘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으로부터 제출받는 평가자료의 접수 및 검토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국별협력사업 종료보고 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번 유상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목표 범위를 이탈할 정도로 낮은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적정 수준의 이자율과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등 유상 ODA 인정액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쪽입니다.

19번 한국국제협력단의 출연금 미교부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향후 ODA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을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고, 둘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의 미교부를 최소화할 목표치를 설정하고 출연금의 분기별 교부계획 수립 등 집행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0번 한국국제협력단의 초년도 예산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 문제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초년도 예산집행 저조 및 착수 지연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통해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쪽 21번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이 단년도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액 이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 일정 및 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고, 둘째 외교부는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수원국 협의 지연, 사업 설계 미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를 지양할 것입니다.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11번부터 13번에 대해서는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14번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각 부처 간 면밀한 협의 및 사전 설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에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부는 금번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서 정상회의 및 부처 공동사업 추진 시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필수경비 편성, 부처 간 기능별 분담에 따른 세부 세출 항목에 대한 실무협의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실시하도록 하는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5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별협력사업의 연차별 실소요를 반영한 집행계획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에서 다년도로 집행되는 ODA 사업에 내재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비 기획·조사 체계의 고도화, 집행 관리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가능한 제도개선을 통해 연차별 실소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번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17번하고 19번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향후 수원국 평가보고서, 국제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 접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료보고 시점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고 종료보고 적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번의 경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8번의 경우에는 이게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인 만큼 저희는 삭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소관 부처에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

겠습니다.

20번과 21번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재정 위원 제가 제도개선 관련해서 거의 모든 항목에 의견을 내다시피 했는데 ODA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USAID를 대신하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다자적 측면뿐만 아니라 또 양자관계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동의를 얻고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도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불비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항목 항목별 제도개선이 아니라 전체적 차원에서 골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안 되면 향후에 사업 자체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양자관계가 파편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지표조차도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보고가 누락되고 점검할 수조차 없다면 저는 사실 다자적 측면에 예산 할당을 더 한다든지 다른 방식의 모색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각국 영역, 지역마다 특색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자체가 갖는 장래적인 어떤 가능성과는 별도로 여전히 우리 기업 진출이 쉽지 않고 또 사회·경제적인 매몰비용을 고려한다면 투자 동기도 쉽지 않고 미수금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면 사기업을 통한 이후 ODA나 EDCF가, 유상 ODA가 견인하는 그런 효과도 크지도 않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고민을,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ODA와 관련해서 점검도 하고 하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모든 항목에 지금 같은 내용의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답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ODA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자적인 지원과 다자적 지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다자적 지원에 있어서는 오버헤드 코스트(overhead costs)가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통하다 보면. 양자적 지원은 국가 자체가 개발도상국이거나 후진국이기 때문에 행정 체계가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성이 있는데 대신 감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양자적 측면에 있어서의 임팩트가 상당히 다른 외교적 목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런데 예산적으로는 집행률이 낮아지거나 여러 가지 그 안의 행정 절차가 느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임팩트는 더 클 수가 있다.

다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하게 되고 저희가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니터링이 더 잘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입니다. 박종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편적인 제도개선을 떠나 가지고 좀 더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ODA 수행 체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조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4차 기본계획 내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산 또는 국조실 그리고 국정위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 방안을 마련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저는 양자나 다자 어떤 것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자적 측면의 기여 자체가 행정 비용이 과다하고 또 효율성이라든지 모금 부분에 대한 고민 또 한국에 돌아오는 혜택이 사실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 번째 지적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자체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분이 늘어날 때는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리더십 과정에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을 늘려 가는 측면에서의 성과라도 있거든요.

의외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양자관계 ODA에서 감사하다, 공관의 외교관님 한 번 듣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격과 관련된 큰 단위의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꾸준히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담보했을 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기획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런 성과, 양자에도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처 공동사업 추진할 때 너무 기계적 배분을 하는 결과 아닌가, 사실은 기능별 분담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항목을 산출할 때부터 면밀한 협의를 해야, 사전에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설계를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기계적 분담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건 위원 ODA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18번에 유상 ODA 인정액 제고방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유상 ODA를 우리가 하는데, EDCF나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인정을 못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상 ODA 자체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예.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유상의 경우에는 그 등가치를 무상과 똑같이 환산했을 때 환산치만 나중에 OECD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계상비율은 이자율이라든가 얼마만큼 장기의 차관을 공여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상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차관의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런 차관의 조건을 설정할 때 계상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지금 이게 차관의 절반만 유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반은 나중에, 쉽게 말하면 떼먹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인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아닙니다. 이게……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왜 예산을 그렇게 하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계상을 할 때 유상과 무상이 전부 다, 두 가지가 서로 실제로 개도국의 개발에 가져오는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OECD에서 예산하는 비율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의 경우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되는지를 등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러니까 사실은 원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이 붙지 않은 무상이 순수한 원조고요. 그것은 OECD에서 이렇게 각국이 원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유상인 경우에는 저희 기업이 들어가서 다시 돈이 저희한테 환류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원조라고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디스카운트해 버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이해했습니다.

○**최혁진 위원** 차관님!

○**소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김건 위원님 안 끝났어요.

○**최혁진 위원** 예.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교부에서 이것은 관계부처 사항, 기재부 소관 사항이니까 18번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외교부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따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ODA라는 것 전체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 위원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것은 같이 잠깐 논의하기로 하고요.

말씀하십시오.

○**최혁진 위원** 차관님 몇 가지만 물겠습니다.

12번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일중 3국 협력사무소 같으면 지금 외교부에서 많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외교부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여기의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다라고 했는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어쨌든 면밀히 점검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관별 성과계약서를 도입하고 분담금의 성과와 연동된 환류 절차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정요구사항인데 이 내용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게 관철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일중 3국 협력사무소니까, 이게 국제기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관찰시키겠다라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나 잠깐 묻고 싶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어떤 회계 관련 정보를 저희와 공유하는 국제기구도 있고 또 한일중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13번에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실질적 활동이 계획 대비 축소’, 실질적 활동이 계획 대비 축소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사실은 한두 가지라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이 53%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 국외업무여비라고 하는 것이 업무 책정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이나 업무량을 고려해서, 인력까지 다 조정해서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절반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아주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일을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게 저희가 안보리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보리에 계시는 각국의 대사님들도 불러들이고 이런 것인데 그쪽 참여를 사실은, 그쪽 자체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분망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오시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성사를 못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어쨌든 차관님 말씀은 적극적으로 했으나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될 테니까요.

14번에 대해서 시정을 철회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적사항 중에 정책연구비 1억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다라고 하는 게 자꾸 눈에 띄어서요. 어쨌든 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관련 회의라고 하는 건데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도입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연구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정책연구비 1억 원을 전액 미집행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하신 배경이 궁금하긴 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게 국방부하고 두 부처가 함께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을 형식적으로 그냥 각 과목별로 반으로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잘 안 맞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부처는 일반수용비가 필요하고 이 부처는 정책연구비가 필요하고 이런 분담이 잘 됐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미진했습니다.

○**최혁진 위원** 서로 간에 사전 협의가 잘 안 된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플래닝이 사실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앞으로는 각 부처와 함께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ODA 얘기가 나와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ODA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 개인……

○차지호 위원 외교부의 생각.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ODA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국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국제적 어떤 의무 이행의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도덕적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교적 수단이다, 저희의 다른 여러 가지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경제외교라든가 아니면 정무적 측면의 외교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이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국격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외교적 레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ODA 할 때는 그 국가가 가진 수요, 그러니까 ODA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나 국가들에 대해서 원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도덕적 자산을 확보하고 또 외교적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베트남 사업은 왜 하는 걸까요?

베트남 사업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도 한데 베트남이 연 예산이, 정부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00조 중에서 우리가 하는 원조의 양이 그 나라에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베트남 부동산 가격관리 역량강화사업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어떤 도덕적인 혹은 국격을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ODA 수원국의 상당수가 현지의 실제 니즈에 기반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국가가, 베트남이 100조 예산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 관련된 어떤 역량 강화를 못 해서 문제일까요?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 사업 해서 여기에 대한 DB들도 만들어 준 사업들이 포함돼 있던데 베트남이 IT 인력 쪽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인력 공급의 측에서.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업들을 왜 하는지, 제가 국제개발이랑 인도적 위기 관련해서 지난 20년간 일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는 걸까요?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사업 하나하나의 구체적 배경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단지 ODA 사업도 사실은 그 사업 자체를 제안할 수 있는 행정적 또 기술적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자체에서 그런 수요를 잘 개발해서 저희한테 그 니즈를 반영해서 가져와야 되고.

○차지호 위원 아니, 차관님 그 니즈를 개발할 수 있는 행정적 혹은 거버넌스가 튼튼한 국가들이 과연 ODA에서 주요 수원국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나라인가요?

우리가 ODA 기본은 가장 힘든 국가들 혹은 한국에서 원조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나라들이 돼야지 그게 외교적 레버리지가 되든 아니면 국격이나 도덕적 자산을 확보하든 이게 되는 건데 베트남 같은 나라에 부동산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나요?

저는 이 사업들 자체가, 사실 하나하나 뜯어 보면 ODA 사업의 상당 프로그램 자체가 말씀하시는 한국의 외교적 자산이라든지 국격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실제 국민들이 ODA에 동의하는 것은 힘든 국가,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나라들에 집중을 하고자 국민들이 세금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니즈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개발협력 관련된 로드맵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형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모형들을 따라가고 그리고 외교적 실익들, 구체적 실익들도 있는 상태도 아니고 베트남이 이것 했다고 고마워할까요? 아니면 우리 외교관계가 이걸 했다고 더 나은 어떤 레버리지를 삼을 수 있을까요? 혹은 그 국가에 있는 굉장히 소외된 그룹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서 그 국가들 자체가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새로 만들게 될까요? 외교적 실익도 없고 실제 국제원조의 원칙인 잘사는 국가들이 굉장히 힘겨운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도 없는 사업들이 KOICA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수로. 4차 기본계획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식의 수요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원국별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결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까 김건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18번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기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재정 위원님이나 아까 차지호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저도 그렇지만—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ODA 사업 자체의 구조설계나 정부 전체 차원에서의 ODA 사업의 의미나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제안보 관련해서도 부처에서 당장 통상교섭본부만 하더라도 외교부하고는 전략적으로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안보 관련돼서 지금 외교부에서도 조직도 일부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덧대 가지고 되는 거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ODA도 지금 그렇거든요, 유상·무상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ODA를 어느 부처가 어떻게 전체를 설계하고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누가 정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환류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새 정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교부가 정리된 답변을 내놔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은 정리해서 내기로 하고. 일단 결산 관련해서 아까 지적한 실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하면 될 것 같고. 이 지적에 대해서 잊지 말고 다음에 ODA 전체 정부 차원, 외교부 차원이 아니고 전

체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 있고 어떻게 설계가 돼 있고 어떻게 평가체계를 가져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 하실 말씀.....

○**윤후덕 위원** 아니, 연이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ODA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워요. 기존 3년 동안에 또 금액이 1.5배, 2배 이렇게 늘어나면서 아주 힘들어요. 분석하는데도 힘들어요. 집행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 신임 장관님께서 업무보고하면서 8페이지의 ODA에 대해서 한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2026년에서 30년까지 5년 차를 다시 수정하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수정합니다.

○**윤후덕 위원** 여기에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저성과·부실 사업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리고 역량 있는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강을 제대로 잡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진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신임 장관이.

그러면 이것 언제쯤 작성할 거예요? 기본계획을 언제쯤 다시 만들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올해 안으로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금년 안에?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 26년 예산안은 지금 반영하고 편성하고 9월 1일 날 국회에 넘어올 것 아니에요, ODA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하여튼 예산 심사할 때 부실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 이런 것은 삭감도 하고 조정을 합시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지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앞에는 위원님들 문제의식 이런 것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길게 했는데 뒤에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일단 정리할게요.

아까 받아들이시기로 한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14번 같은 경우는 외교부가 국방부하고 아마 특히 AI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동주최 국제행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경험 삼았다고 생각하고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되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하게 편성하시도록 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15번,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실 18번하고 이게 다 연결된 부분, 19번하고도 연결된 것 같은데요. 제도개선으로 일단 해 드릴 테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하기로 합시다.

18번은 현재로서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재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ODA 관련된 영역으로 보자면 저는 외교부가 총괄 보고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일단 우리 외통위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것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예산 보고받을 때 이걸 포함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외교부도 업무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17번 첫 번째 사항에 주의랑 제도개선 두 가지 중에……

○소위원장 김영배 17번은 아까 지적들이 크게는 없으셨는데 일단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하기로 하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19번도 있습니다, 19번 첫 번째 사항.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도 아까 제도개선 하겠다고, 제가 아까 앞엣것하고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그러면 18번은 실무적 반영하고 업무보고하는 걸 전제로 이 결산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은 삭제하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요, 제도개선으로 넣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유지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영배 예, 유지하는 걸로 하시지요. 아까 김건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더 이상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다음, 12쪽 22번부터 29번까지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번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에서 개별 사업의 취소가 연쇄적으로 패키지 내 다른 사업 취소를 유발하는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ODA 사업 패키지의 사전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3번 베트남 ODA 사업 등 사업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차질이 생긴 사례 지적과 함께 외교부는 ODA 사업의 사업 심사 단계에서 제시된 법·제도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13쪽입니다.

24번 인도네시아 ODA 사업 중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지연 문제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ICT 기반 통합지식교육센터 구축 사업의 선행사업 종료보고 및 사후관리를 마무리한 후 후속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25번 인도 ODA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지적과 함께 외교부는 인도 ODA 사업을 현지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방식으로 방식을 전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14쪽 26번 미얀마·우크라이나 등 정세불안 수원국 사업의 실적 부진에 대하여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 현지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사업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할 것이고, 시정요구사항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외교부는 미얀마 사업에 대하여 현지 정세를 전면 재평가하고 사업의 존속 여부와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27번 수원국 제도적 기반 파악 부족으로 차질을 빚은 타지키스탄 ODA 사례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주요 구성요소와 관련한 수원국의 제도적 기반 등을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예비조사 단계를 강화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5쪽 28번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실적 달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운영에 있어 개발국과 파견 현장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인력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치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29번 글로벌 연수 ODA 사업 중 학위연수의 운영에 있어 이월액이 과다한 문제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학위연수 운영에 있어 차년도 이월이 반복되는 관행을 지속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하에 사업 예산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22번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아까 18번과 마찬가지로 타 부처, 국무조정실 소관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게 삭제되거나 아니면 부대의견 정도로 들어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번 사업 심사 단계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지적의 경우에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사유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심사 단계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을 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굴 형성 단계에서 수원국 법 개정 상황, 사업 중복 연계 여부, 선행 사업 추진경과 등이 점검되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 중에 있습니다.

24번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5번 아시아 지역 ODA 사업 집행률 개선과 26번 정세불안 수원국에 대한 ODA 집행

관리의 경우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락하시면, 25번의 경우에는 인도 ODA 사업의 경우에 수원국 정세 등 사업 추진 여건 및 수원국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26번의 경우에는 미얀마·우크라이나와 같은 정세불안 지역의 경우 치안·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계획에 따른 집행관리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7번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28번 29번 30번도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국가별 수요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현지 상황에 따른 수요 변경 가능성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9번은 실제 학위과정을 수행하는 연수 기간의 정산 시점—보통 익년 2월 말인데요—과 정부 회계연도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아까 앞에서 지적이 있었던 대로 22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이게 다부처 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넣어서 같이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윤후덕 위원** 23번 이것은 제가 한 건데……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23·24번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에서 이러한 사정이 생기는 것은 실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매뉴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기에는 현실에서는 어렵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부정한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부적격 업체가 들어가서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금방금방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지에서 수용하면서……

좋은 사업이라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닌 사업이라면 사실은 철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현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렇게 되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후덕 위원**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행정 개편을 하는 게, 이를테면 5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반으로 줄이는 통폐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수원국으로서 뭘 하는지 정신도 없어요, 실제. 이런 현지의 변화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이번 4차 계획에는 좀 적용을 해 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계속 ODA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지적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5번의 인도는 왜 이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KOICA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KOICA 누가 나오셨나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KOICA 경영전략이사 김동호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23년도와 24년도가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요. 인도가 기본적으로 무상원조에 대해 별로 적극적인 지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무상지원사업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인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호도 자체가 유상을 선호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KOICA 주재원이 파견이 돼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유상으로 달라는데 무상으로 주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아닙니다. 유상을 기본으로 원하는데요. 저희 사업 자체가 진척이 안 됐던 게 인도에서 그런 태도 때문에 진척이 좀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도와주기 힘든 나라 많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예.

○**이재정 위원** 도와주기 힘든 나라인 것 모르지 않았잖아요. 지금 인도 관련해 가지고 ODA 들여다보는 대부분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방금도 위원님들 필드에서 얘기하셨겠지만 설득으로 될 문제인가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ODA가 갖는 그 사업 자체의 절박함이나 이것은 수원국에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원하지도 않는데 주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나라에 계속 배분되고 불용되고 하는 방식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 아닌데 이 정권에 한정된 일도, 모디 정권에 한정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가 가지는 ODA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정리를 할게요.

일단 아까 22번은 똑같이 제도개선으로 그대로 두고 하기로 하고요.

23번 25번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하되 아까 얘기했던 대로, 26년도부터 제4차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재설계를 하시기로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

까 그때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번하고 29번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미얀마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사실은 좀 사업을 할 때 정세 불안이 뻔히 예상되는 곳이잖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 전체 제도 설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말 조금만 더 붙여 보겠습니다. 미얀마와 인도의 예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니즈를 얘기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니즈가 큰 국가들이…… 미얀마가 안정기 때보다 분쟁으로 접어들면서 사실 수원국의 니즈는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ODA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도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안정기와 분쟁 시기의 미얀마는 서로 상황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가진 ODA 프레임워크 안에는 여기에 좀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ODA를 하면서 ODA 대상국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대상국들은 그런 불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식의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예산이 800조가 넘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보다 일단 중앙정부에서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정부에서, 한국에서 주는 작은 ODA가 그쪽 국가에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ODA를 안 받아 준다고, 필요 없는 ODA를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 안 받아 준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인도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인도의 니즈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수행 프로그램이 아닌 과학기술 협력이라든지 몇 가지 인도에서 ODA 형태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필요한 사업 수행 형태로 이걸 타기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텍스트를 살피려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현지 KOICA 사무소와 현지 수원국에서, 수원국도 수원국을 대표하는 곳들이 아닌 그쪽 수원국의 일부 부처가 생각하는 니즈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집행률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차 국제개발기본계획 안에서는 사실상 이런 식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담아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국장이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합시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얘기를 하시지요.

일단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29번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30번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30번부터 36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30번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CTS 운영의 부진한 성과 관련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CTS의 목적성을 재학립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이고.

둘째, 외교부는 CTS 사업 예산안 편성·집행 시 SEED3 단계 예산을 타 단계로 전용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향후 SEED3 예산을 SEED 1·2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담은 단계 간 전용 관리지침을 제정할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쪽의 31번 국제기구와 약정 체결 이후 사업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낮음에도 매년 추가 교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지적과 함께 두 가지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국제기구협력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내부 미집행 잔액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일 사업의 약정금 교부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외교부는 신규 국제기구협력 사업 추진 시 약정서에 실집행 현황 보고 의무 및 집행 부진 시 교부금 조정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32번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아동 긴급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우려가 있는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33번 KDRT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KOICA 협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행정업무 위탁용역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2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보조사업자가 예산 집행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수행할 것, 둘째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유형은 모두 시정입니다.

19쪽 34번 인도적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외교부는 긴급구호를 비롯한 인도적 지원 예산의 집행 계기와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조치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고, 둘째 외교부는 국회의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5번 KDRT 사무국 예산에서 KOICA 인도지원처 관련 용역이 다수 수행된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 KDRT 관련 각종 용역 수행 시 성과지표 설정 및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0쪽 36번입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집행된 데 대하여 2개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예산에서 정상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한 것과 같이 법과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 사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이고.

둘째, 외교부는 정상공약 이행 관련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저희가 30번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허락하시면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금년 5월 국제기구의 실집행률 적기 보고 의무를 약정서 표준문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약정금 지급 규모 및 시기를 조정하는 추가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추진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제기구마다 실집행률 기준이 다르고 재정 보고 규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번 32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33번의 경우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 관련 의원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KOICA의 보조사업 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35번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36번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향후 우리 인도적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34번 의견은 안 밝히신 것 같은데요.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소위원장 김영배 34번에 대해서 뭐라고……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둘 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33번 사실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도 늘고 업무가 엄청 늘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려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비정상을 그냥 정상처럼 느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런 것을 시정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시정을 받아야 가서 인력도 정상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정으로 그냥 놔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실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어여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차지호 위원 지금 제도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도적 지원과 그리고 개발협력 사이에 예산이 사용되는 방법들, 평가하는 방법들이 사실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에 대해서 개발협력을 하는 것과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평가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중요해지는 부분은 HDP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라고 들어 보셨지요? 지금은 인도적 위기 지역과 개발협력 지역이 사실상 경계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같은 게 중요한 예지요. 안정적인 개발협력 지역이었다가 인도적 위기 지역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가진 사용에 대한, 집행에 대한 프레임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프레임이 계속적으로 불안정성과 전환이 빠른 이런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는 조금 다르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시면 일단 다른 추가 말씀이 없으시면…… 33번 이걸 김건 위원님이 계속 시정으로 요청하시는 거지요?

○김건 위원 시정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ODA 체계 관련해서 갑자기 늘어나면서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계속 예산으로 떼울 거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시정조치 내용은 뭘로 할지를 그러면 외교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허락하시면 개발국장이……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KOICA 인력이, 사실은 KOICA가 마음대로 인력을 갖다 중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KOICA 인력이 기본적으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아시겠지만 터키 대지진이라든가 캐나다 산불 때문에 갑자기 업무가 폭증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감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KOICA 인력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기재부에 당연히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정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기준에 했었던 그 자체가 일종의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감당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제도개선이나 또는 주의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ODA 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어디냐, 누가 종합적으로 책임질 거냐부터 시작해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ODA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다음번에 보고를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되 이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력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시정이 아니고 주의로 일단 해서, 주의로 하고 이 문제는 반드시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냥 제도개선으로 얼렁뚱땅하지 말고 이 문제를 꼭 좀 해결책을 가져오시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김건 위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기웅 위원 주의로 하고 뒤에 나중에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ODA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하나.

○소위원장 김영배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30번……

○김건 위원 아니, 외교부에서 맨날 그렇게 설명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 많이 했지만 하고서 그리고 잊어 먹잖아요, 1년 동안 노력 안 하고.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국정위에서 논의했었던 내용 중에 KOICA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충을 해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검토에, 저희가 분명히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되는 방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ODA 문제는 워낙 예산도 크지만 지금 우리가 글로벌 책임 강국 이렇게 비전을 밝히고, 대통령께서도 잠깐 그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도가 높아질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미국 USAID가 줄어들면서 저한테도 지금 여러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이것 해 주라 저것 해 주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레인가요 게이츠재단의 빌 게이츠가 직접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히 외통위 양 간사가 초청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빌 게이츠와의 간담회가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GAVI 돈 내놔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 이야기하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AVI가 미국에서 돈이 끊어지니까 한국에 와서, 빌 게이츠가 직접 출동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하여튼 이것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의로 하고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30번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31번 32번 다 정리됐고……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31번……

○소위원장 김영배 31번 이것은 아까 제도개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도개선으

로.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2개 다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33번은 주의로 하고.

34번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투명성 제고 방안 이것도 일단은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36번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도개선 이렇게 하는데 36번 문제는 사실 정상이 약속을 하면, 이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정상외교가 그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께서도 불가피한 요청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수록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도개선으로 넣어 놓되 앞으로 향후에도 좀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는 받아들이겠는데 그 대신에 외교부차관님께 제가 다짐을 받겠습니다. 내년 결산에, 저는 외통위를 못 떠날 것 같으니까 내년 결산에 이게 또다시 똑같이 올라오고 인력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시정 또는 정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각오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야당 간사님 말씀이니까 그것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37번부터 몇 번까지 보고하실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43번까지……

○소위원장 김영배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일단 오전 것은 중단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21쪽입니다.

37번 제2회 국민 공공외교 우수사례 공모전 홍보를 위한 매체 광고 추진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문제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용역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한 절차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두 가지 제시되었습니다.

38번 일부 재외공관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협조 요청에 대한 협조가 미흡한 데 대하여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외국 교과서 등 한국 관련 오류정보 발견 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외에 그 누구라도 간편하게 신고하고 오류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간편 오류 신고 서비스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이고, 둘째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오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감독하는 한편 인력 확충 등 오류 시정을 위한 제반이 각 공관에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쪽입니다.

39번 일부 재외공관에서 일반수용비를 집행지침에 어긋나게 집행한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편성에 있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다소 늘리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목에 맞게 집행하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산집행을 도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40번 영사인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일부 대학교와의 업무협력 약정이 실제로는 외무영사직 시험대비반의 운영 지원에 사용되는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향후 사업목표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예산 계획 및 집행 내역을 심사할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둘째 외교부는 향후 대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23쪽 41번은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첫째, 외교부는 추후 해당 사업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의 수요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제도개선 유형의 시정요구이고, 둘째 외교부는 심리치료 지원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 할 것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24쪽 42번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양자·다자 영사외교 강화의 집행률이 저조한 데 대한 시정요구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둘째 외교부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위기 대응 인력 보강 및 해외안전망 인프라를 신속 구축하고 영사콜센터 운영, 해외위기 컨설팅 등 핵심 기능을 우선 집행 관리할 것, 셋째 외교부는 불용액 발생 사유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집행 지연 사업에 대한 사전경보제 및 부처 차원의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25쪽 43번입니다.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두 사업을 동일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향후 여권 실무교육과 여권서비스 만족도 조사 간 기능적 독립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기관의 중복 수탁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교육과 평가 업무를 명확히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데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37번 38번의 경우에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주의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37번의 경우에는 정부광고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38번은 앞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한중연 사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체부와 협업해서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에서 저희는 주의로 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 사유는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예산이 비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예산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목의 수에 맞는 증액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번과 41번의 경우에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한 외무영사직 시험대비반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지원 타당성을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41번 관련해서는 사건사고 대응인력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보다 충실히 운영되어 심리치료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증액 등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2번의 경우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43번의 경우 두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주의로 수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위탁운영과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사업 모두 조달청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는 했습니다. 교육·평가를 동일한 기관이 수행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여권서비스 만족도조사 연구용역을 수행 시에는 업체를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38번 37번 이런 건 주의로 하려고 그랬는데 주의로 받겠다고 하니까 된 것 같고요.

특히 37번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어이가 없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38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이게 교과서 관련된 게 지난번에도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특별히 말씀 있으신가요?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험대비반 운영 지원 말고 제가 생각할 때 돈을 써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교과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교과서가 있나요, 영사학이라는? 시중에 교과서 나온 게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국장 통해서……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장 김동윤** 재외국민보호과장 김동윤입니다.

일단은 교과서 명목으로 일부 전문가들께서 짐될한 저서들은 있고 그것들이 대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쓰이기는 하는데 딱 정확하게 나온 교과서는 지금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차라리 교과서 만드는 것에, 학자들 다 모아 가지고 또 우리 퇴직하신 분들 모아서 교과서 만드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데 좀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재외국민보호과장 김동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차관님, 재외국민 보호 관련해서 저도 시정요구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글로벌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도 해

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재외국민들의 역할들이 어느 때 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져 있는데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보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재외국민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주는 게 여러 가지 불안정 속에서 우리 동포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하나, 결국 공급망 다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정착한 재외국민들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확실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추경의 수요까지 발생하는 모습들을 외교부가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말씀 없으시면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머지는 정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그러면 제도개선 요청한 부분은 제도개선, 주의 요청한 부분은 주의로 할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번부터 오후에 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44번부터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김영배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위원장님, 44번 보고드리기 전에 자료 3쪽 6번 사항 중 확인받을 게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시정사항을 주의로 내리는 것으로 조정을 했는데 외교부 취지가 아래쪽 제도개선까지 해서 2개를 다 주의로 맞춰 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정을 해도……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그러면 2개 다 주의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26쪽 44번입니다.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모두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고 공무직 인원 9명 중 3명이 임차 사무실에 근무 중인 것에 대하여 두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직제를 개정하여 정원을 증원하지 않고 예산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행태를 시정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유형은 시정이고.

둘째, 외교부는 청사의 유휴 공간이 마련될 시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청사 내 입주를 최

우선으로 고려할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7쪽 45번 재외공관의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부진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전문적인 경제안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전문관 채용 관련 비목 변경을 비롯한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하여 재고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6번 44억 규모의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집행을 위해 20개의 다른 내내역사업에서 총 11억여 원을 감액한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특정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을 지나치게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편성 취지에 맞는 예산집행 관행을 조성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8쪽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사업이 8억 4600만 원 중 3억 8900만 원 집행하는 등 미흡함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계획·성과·현안 및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유형은 시정입니다.

48번 외교정보 역량에 대한 지적으로 예산집행률이 10억 중 7억 8600만 원으로 저조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정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고유한 외교정보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예산집행과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외교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49번 재외공무원의 정착지원금에 대한 두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정착지원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둘째 외교부는 정착지원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50번은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짧은 근속연수와 이로 인한 상시적 인력 공백에 대한 것으로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근속연수가 짧고 교체가 잦은 이유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 둘째 외교부는 국가별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력수요 예측, 순환배치 실시 및 고도화, 결원보충을 위한 한시정원 도입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44번의 경우 저희는 사실은 조금 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내 경제안보 인하우스 싱크탱크입니다. 주요 경제현안을 조기에 포착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무공무원보다는 경제안보전문가, 즉 연구원을 채용해서 그런 분석업무를 수행함이 적

절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기업인 등 외부인사와 자주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외부 사무실에서 일부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5번의 경우에는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46번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인데 주의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를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회의 일정, 규모 확대, UNEP 측의 회의 개최 추정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전용, 세목 조정이 생겨났고 이런 지적사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사업비 집행 시에 최초 사업 편성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번의 경우 시정요구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2024년 당초 12월 개최 예정이던 인도-태평양 고위급 포럼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신정부 정책과 부합하게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예산편성을 추진 중입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지평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번과 50번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50번은?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50번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48·49·50번.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데 44번의 경우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센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일단 이렇게 공무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내가 인하우스의 싱크탱크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어요. 도대체 외교부가 인하우스의 싱크탱크로 경제외교센터라고 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어떻게 부여한 거예요? 지금 차관님이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세요? 이런 인하우스 싱크탱크를 만들라고 누가 외교부한테 그런 권한을 줬느냐고요. 외교부의 직제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그런 싱크탱크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조금 상징적 설명을 드린 것인데 그런 기능을 하는 팀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김건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정부 조직에서 무슨 인하우스 싱크탱크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국립외교원 마음대로 만드는 것인가요? 실제 다 있잖아요. 아니면 근거법이 다 있고.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와서 이것은 인하우스 싱크탱크다 그러시면 그런 불법적인 기관을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곤란하거든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저는 삭제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면 법제화를 하시든가. 앞으로 추진을 해서 차후에라도 법을 만들든가, 그렇게 외교부에서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 KDI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연구하는 것. 그런데 외교부도 국립외교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의 설명을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우선 이 센터가 언제 생겼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22년에 설립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2년?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바로 만든 것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때 예산이 처음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네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김영배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차관님, 저도 44번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 근속연한 문제도 나중에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무기계약직 인정을 해 준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앞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으로 키우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공무직 체계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기관들도 경제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접촉이 필요해서 외곽에 두고 공무직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민간기관 입장에서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통상 공무직들하고 얘기하면 다시 안에 들어가서 재협의하고 시간만 오래 걸리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게 정말 민간기구하고의 상시적인 협력 또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면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시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직제를 개정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안정감 있게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이 또 그런 부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기능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아주 솔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정식 직제화해서 이것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제도개선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제도개선 방향으로 검토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센터장이 몇 급이지요? 센터장이 몇 급으로 보임되어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3급 심의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심의관으로?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나머지 공무직들은 급여 수준이 몇 급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까? 연구원인데 전문직 가급·나급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죄송합니다.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입니다.

가급에 한 세 분 정도 계시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 나급, 다급에 각각 지금 몇 분씩 계셔서 총……

○소위원장 김영배 가급이면 박사급이지요?

○외교부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예, 맞습니다.

총 아홉 분이 계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게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안보의 필요성이 등장을 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이렇게 일종의 공무직들을 채용해서 필요성을 일단은 채운다 이렇게 해서 이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얼른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잘못 문제가 아니고 아까 처음에 ODA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에 안보실 3차장을 두고 경제안보 분야를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외교부하고 산자부의 통상교섭본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은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고 나면 이런 문제들을 전체 정부조직 내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가 아마 논의가 불가피하게 정기국회 때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바나 아니면 방침을 공개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조직이 어떻게 저렇고 저렇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건 위원 직제 바꿀 때는 국회의 다수 의석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건 관계없어요?

○김건 위원 정부 내부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가요?

○김건 위원 예. 그러니까 경제안보외교센터가 급하게 설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마 기재부 예산은 딸 수 있었는데 행안부와의 그런 게……

○소위원장 김영배 행안부, 조직이 문제였겠구나.

○김건 위원 그래서 직제에 못 넣었겠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랬겠네.

○김건 위원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데 급하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 만들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항상 이렇게 해 놓으면 그다음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제를 넣든가 아니면 별도 법을 추진해서 법을 만들든가, 그래서 정부기관이니까 적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도 적법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 어쨌든 두 분이 지적하신 부분 포함해서 제 생각은 이 논의가 실제로 공개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실은 김건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산자부장관 등이 협상을 하고 온 결과를 법상으로 보면 외통위가 보고받을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가 서로 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상임위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8월 달에 못 잡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산자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출석해야 되는 산자위가 동일한 날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그날 잡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중복 아니라 뭐라도 해야지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리고 어떤 게 더 현 정부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게 좋을까, 맞을까 이 부분도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대로 두고요. 오히려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이 문제는 추후에 정기국회 때 논의가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강조를 해서 저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고, 44번은 제도개선으로 넣어 놓고, 진짜 이건 제도개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 위원** 그렇게만 하시면 현 정부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아예…… 사실 이 이슈가 장기화될 거거든요.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서 차라리 이 기회에 야당 위원들하고 여당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경제안보외교센터법을 하나 만들든가 이런 것도 부대의견으로 저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센터로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대통령실 3차장이 주관하는 일종의 NSC,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낸 의견은 NEC 같은, 미국에는 NEC가 있는데 좀 다르기는 한데 NSC 비슷하게 대통령실하고 부처하고 이렇게 관련기관들이 위원회 형식으로, 아예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하는 회의를 신설하는 게 낫지 않느냐……

○**김건 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그러니까 경제안보 영역이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교부에서 그것의 후속으로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할 건지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해 줄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우리가 법 이렇게까지 나가는 건…… 법안은 당연히 논의가 결론이 나면 후속으로 갈 텐데,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 넣어 놓고 말씀대로 이것은 함께 해결하는 것으로……

○**김건 위원** 그런데 부대의견에 이렇게 법이라는 것도 하나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소위원장 김영배 예,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을 해서 이것은 법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부대의견을 넣어 주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45번 이것은 주의로……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46번.

○소위원장 김영배 아, 46번을 주의로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주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5번은 제도개선으로 가는데, 문제는 45번 같은 경우는…… 45번하고 그다음에 뒤의 인력 문제 50번,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갔을 때,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해외 현지 인력들이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본대사관으로 이직을 하더라. 대한민국 혹은 일본으로 가면 괜찮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낮은, 낮다고 판단되는 나라의 공관으로 이직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런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결국 자주 바뀌고 이런 문제가 다 그것하고 연관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0번하고 45번 이런 문제가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무래도 임금 수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제도개선으로 하되 이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간담회를 비공개로 했을 때 외교부의 정원 자체와 직제 자체가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현재 있는 인력이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단가, 표준임금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이게 낮아 가지고 이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기밀유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격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국장께, 허락하시면……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조정기획관 문인석 조정기획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외교부 직원들 그리고 재외공관에 있는 행정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의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재부에서 받고 있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저희가 행정직원 노조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행정직원들의 복리 수준과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인당 105불을 전원 동일하게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 인상을 합의를 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구조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기재부와도 지속 협의를 하고 아울러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윤후덕 위원님도 예결위원장도 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시고 위원님들이 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재외공관에 있는 행정직원들 포함해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분들의 처우나 조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나중에 이게 기재부로도 의견도 전달하고 다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47번은 어떻습니까?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여세요?

○김건 위원 인태 전략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기존에 확보된 예산의 불용률이 너무 높잖아요. 높고,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 1억은 지금 그러면 제대로 쓸 건가요? 올해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도개선으로?

○김건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8·49·50은 다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1번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자료 30쪽입니다.

마지막까지 7건 되겠는데요.

51번 매년 부족하게 편성되어 이·전용을 통한 예산 충당이 관례화되어 있는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이·전용 등 예산 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액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데, 유형은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52번 재외공관 주요행사비의 일부를 공관직원 교체여비 충당을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전용해 온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재외공관 주요행사비를 적합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가 승인한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1쪽입니다.

53번 단기 인턴 위주로 청년인턴 채용 사업이 운영되는 데 대하여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청년인턴 채용 시 장기 인턴 비중 확대를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4번 재외공관장회의 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시 예산의 초과 집행과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

의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32쪽 55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재정 여건 악화가 사업별로 빈번한 자체 변경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인데 시정요구사항은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과 기금운용계획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56번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지원이 환율 위험에 대한 대비 미흡으로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교부는 예산 운용과 같은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당초 지원계획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의 57번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관련 준비작업이 면밀하지 못해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지연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 지적과 함께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는 향후 사업 이관 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징수위탁수수료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속하게 지급할 것, 둘째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환불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고 유형은 모두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사실은 51번과 52번의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요구유형 중에 주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 시에 교체여비 등 필요한 실소요 반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많아서요 저희가 예산 이·전용이 불가피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2025년 교체여비는 35억이 증액된 13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같은 대규모 이·전용이 불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적정한 교체여비 소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그리고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번부터 57번까지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이게 51번하고 52번 문제는 돈을 부족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건 뭐 도리 없네요, 도리 없어. 그렇다고 풍족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할 수 없네요. 이건 제도개선이나 주의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좀 창피합

니다, 나도.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이런 얘기는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소위원장 김영배 풍족하게 해 주시면……

○윤후덕 위원 예, 국회에서 좀 풍족하게 이것은 증액시킬게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후덕 위원 이것은 지적하지 맙시다.

○소위원장 김영배 56번에 말이에요, 이게 GAVI가 그러면 24년도에는 118만 불만 지원 됐다는 뜻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맞습니다. 118만 불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빌 게이츠가 내일 오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것만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상세 사항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허락해 주시면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GAVI 대상으로 질병퇴치기금에서 118만 불이 지원이 됐고요. ACT-A라고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5000만 불이 별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5000만 불?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난번에 질병퇴치기금, 우리가 법을 없앨 때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했던 거지요?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2024년까지 질퇴기금으로 지원되던 국제보건기구 예산은 글로벌 보건 기여 분담금으로 해서 지금 분담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요.

○소위원장 김영배 얼마가 편성이 됐지요?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한 3600만 불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우리 돈으로 500억이 조금 안 되겠네? 사백 얼마……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지요? 사백 얼마였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앞으로 매년 우리가 예산으로 책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예, 분담금으로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질퇴기금으로만 보면 118만 불만 이행이 된 거고 별도로 5000만 불을 추가 지원했다 이 말인가요?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예, 2024년에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4년의 경우에.

○차지호 위원 그러면 전체 분담금 규모가 늘어났나요? 제 말은 우리가 질퇴기금이 이제 없어지면서 그것을 국고로 보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빼서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체 분담금 규모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명목상만 이쪽으

로 변화하게 되는 거면 질퇴기금이 항공료에서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기여하는 돈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그걸 굳이 없애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정당화된 이유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사실 저희는 전체 분담금 중에 글로벌 보건 기여 분담금만 소관을 하고 있고요. 전체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규모를 말씀……

○**차지호 위원** 어디 소관이에요? 외교부 소관 아니에요?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지금 국제기구국에서 분담금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제가 외교부에 질문하는 거지 지금 나와 계신 분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교부개발협력정책관 정은영**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을……

○**차지호 위원** 저희가 외교부에 질의하는 거지 그 과에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 일이라고 모른다고 얘기해 버리시면 어떡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일단 그 분담금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질퇴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항공료에서 얼마씩 빠졌었잖아요. 그 기금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보태는 것에 외국인들이 사실상 매칭되지 못한 형태로 지원이 됐었는데 그때 국회 상임위에서 저희가 굉장히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시켜 버렸어요.

그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이 예산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들이 빠지게 된 것들이 뭔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질퇴기금이 다시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때 차관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인데 국회 외통위에서는 질퇴기금을 없애는 법을 반대했었어요, 전체가 여야 같이 반대했고. 그런데 그게 왜 통과됐나? 그 당시에 여야 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산 처리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이어서 이게 불가피하게 그냥 하여튼 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대통령실에서 아마 각종 기금 정비한다고 할 때 국민 부담을 줄인다 이런 명분으로 추진됐던 일의 일환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아까 차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합리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응 부담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오요.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자기가 사실 책임져야 될 분담금 정도는 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모아서 기금 만드는 게 나는 아주 맞는 얘기 같은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야기 없으시면 아까 정리한 것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51번 52번을 윤후덕 위원님 삭제 의견 주셨는데……

○소위원장 김영배 삭제는 아니고 아까 질의하지 말자고 하신 것……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아니요, 빼자고……

○소위원장 김영배 질의하지 말자고 그러신 거니까요.

주의로 일단 해 놓고 넘어가시지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된 것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는 없지요,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 된 거지요?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마지막으로 56번은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예.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알겠습니다.

외교부 심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정요구명당 시정요구사항이 여러 건인 경우에 1건으로 의결한다는 예결위 기준에 따라 저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1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37건과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초안 말씀드리면 ‘첫째,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 현안 논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경제안보외교센터 등 조직 운영 방안을 정기국회까지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둘째,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비롯한 재외공관 근무 현지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교부 결산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윤주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잠시만 자리에 계시고 그냥 바로 되는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변철환 차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재외동포청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1번 주요 사업 예산의 반복적인 조정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데 대한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청은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용 등 예산 조정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2번 일반적으로 자산취득의 성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한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재외동포청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과목 성격에 맞는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하고 예산의 목적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2쪽 3번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구용역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점에 추진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은 재외동포청은 연구용역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전액 불용 관련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소송의 발생 가능성 및 예상 소요 수준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의 계획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좋은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외동포청은 말씀 주신 4건에 대해서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4번에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이것은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한 예산이었나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일반적인 민원 등의 사항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의 경우에 소송 비용 등을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3년 개청할 때 타 부처 사례를 참고해서 편성하였는데 참고로 외교부 4억 원, 국토교통부 5억 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24년도에 2.2억을 편성했었는데 한 번도 소송 사례가 없어서 전액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인데요. 참고로 24년도에는 2.2억이었는데 전액 불용이어서 올해는 1.8억으로 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 저희들 요구사항은 1.5억으로 또 소액 감액한 상황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재외동포청이 예비비가 있습니까, 따로?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송을 예비비 성격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 비용은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아예 없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되는 거지요.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불용되는 건 잘된 거지요?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지적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렇지, 이것은 뺏시다. 이것은 제도개선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항목을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편성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예상을 하는 거니까. 잘했어요, 이것은.

그리고 그 앞에 1번 2번도 보니까 예산을 너무 제대로 안 주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예.

○**윤후덕 위원** 참 불쌍하네요,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없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나마라도 사업을 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재외동포청이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적확하게 편성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률적으로 다른 기관의 것을 따다가 책정한 예산이 아닌가, 조금 더 축소해도 좋다는 취지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은 이렇게 지적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윤후덕 위원님이 예결위원장 하시고 다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예산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지요.

특별히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이제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재외동포청 결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주의 1건, 제도개선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주의가 있어야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첫 번째, 1번은 주의로……

○**윤후덕 위원**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재외동포청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통일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면 세팅을 하고 바로 시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남중 통일부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오늘 차관님이 우리 소위원회에 처음 오신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오늘 인사말 잠깐 하시고 시작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부차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소위심사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어서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의견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 중 통일부 소관 회계 및 기금 결산 관련하여 서면으로 40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소위자료로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는데 이 가운데 목차에서 보시는 연번 17번과 연번 37번이 오늘 오전 최종 철회되어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사항은 모두 38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연번에 따라 사항별 심사에 들어가시는데 심사 편의상 전문위원이 소위자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1번부터 16번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고 다음 17번부터 32번까지 그리고 나머지와 부대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 기금 공통 총괄 사항입니다.

통일부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함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 사업평가 기반 예산 운영, 국회와의 정책 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참고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부대의견이 있는데 부대의견 중 1번과 관련하여 동일한 시정요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예산, 기금 공통 총괄 사항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조사대상과 평가방식을 재설계하고 사업 내용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를 재검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번입니다.

일반회계 7개 세부사업 공통인데 1억 원 이상 보조단체의 회계검사 비용 마련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1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회계검사 비용과 관련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부서 담당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 보조단체에 통보하는 보조금 지침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보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 사항인데 수납률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징수결정 이후 집행 절차 이행을 강화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징 노력을 통해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입니다.

일반회계 통일정책추진 관련 사항으로 신년 특별좌담회 등 분할 수의계약 집행 추진 부적절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사업 실무자가 긴급성 등 계약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별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입니다.

일반회계 통일정책추진에서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실효성 확보 및 활용 방안 모색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향후 국제사회 통일인식조사 수행 시 조사비, 인건비 등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 일반회계 통일정책추진에서 5·16 및 유신독재 정당화 연구용역에 궁정 평가 부적절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 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합당하게 평가하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8번입니다.

일반회계 통일정책추진에서 세목별 초과집행 등 예산 집행의 불균형 해소 필요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불용되거나 초과 집행되는 세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집행 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세부 계약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번입니다.

통일정책추진에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성과 제고 필요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인데 첫째,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것이고, 둘째 각 분야별 전문가 논의가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이고, 셋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항목은 사업실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10번 일반회계 통일정책추진 계속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폐지 필요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통일부는 정책자문위와 중복되고 의미 있는 통일담론 마련에 실패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할 것이고, 둘째 통일부는 8·15 통일독트린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 주의를 줄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11번 일반회계 통일정책추진 계속입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자문기구 예산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통일부는 위원회 예산이 장관의 일반 업무추진성 경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고, 둘째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 및 예산 운영체계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12번 일반회계 국내통일기반조성입니다.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예산 집행관리 내실화 필요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등 추진 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외부 변수 리스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3번 일반회계 국내통일기반조성 계속입니다.

보조금 관리 및 사업관리 철저 등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사업시행 주체에 대하여 공사 착수 지연 등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된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업시행 주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년 말에 예정된 개관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14번 일반회계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단독 응찰 반복에 따른 수의계약 구조개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등에서 수의계약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5번 일반회계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을 실제 활용 목적과 부합하도록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해상도 정밀 위성영상의 적시 구매 및 활용을 위한 내부

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시행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6번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건립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을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향후 준공 및 개관 일정이 더 이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첫 번째 관련된 사항은 이게 정책과 관련된, 정책 일관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대의견 쪽으로 의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부터 16번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재정 위원 연번 5번 신년 특별좌담회 부분은 얘기를 하기는 해야겠습니다.

이것 왜 이런 꼼수를 쓰셨대요? 하나의 행사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될 당시여 가지고 급하게 의견 같은 것들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 하나의 행사를 똑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액 나누고 이것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게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회의록에 남기기도 정말 그렇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첫 번째 것은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부대의견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방침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 것, 수납률 얘기하는데 이게 북한주민을 접촉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접촉을 했다 이런 건이 11건이고 그중에서 9건은 과태료를, 돈도 안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윤후덕 위원 북한주민을 신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2003년 이후에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안 해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후덕 위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재정 위원** 제가 조금, 이것 상임위 과정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통일부 자체의 과태료 부과 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해서 사전에 얘기하면 신고 안 받아 주고 그래 놓고 불가피하게 한 접촉들은 모조리 이런 방식으로 과태료를 유난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부과했어요. 이것은 사실 수납률 제고 필요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장관께서 밝히신 내용도 있고 이 부분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과태료 수납률 제고 필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통일부의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과태료 부과가 2023년경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촉 신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재정 위원** 내용 살펴보고 과태료 부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그 애말로 수납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수납을 면제하는 게 맞습니다.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통일부가 반성해야 돼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것을 차관님께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재정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고 이재정 위원님이나 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9번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지난간 거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4일 전의 8·15 경축사에서 8·15……

○**통일부차관 김남중** 폐기를……

○**윤후덕 위원** 1년 전의 통일독트린은 폐기된 거니까 이런 걸로다가 이해하는 걸로 갈 음합시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윤후덕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선하라 그러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폐지할 방침인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폐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그게 절차가 어떤 지침이나 혹은 규정 이런 게……

○**통일부차관 김남중** 규정이 있는데요 규정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11번의 경우에 말이에요, 시정하고 제도개선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찬, 조찬이 진행됐는데 보니까 기준도 없고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도 사실은 나중에 국정감사할 때 이런 것도 어차피 자료가 다 제출돼야 될 텐데 기준도 없이 이렇게 막 이 비용이 지출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가 있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장관입니까?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위원장은 이정훈 연세대 교수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위원장이나 위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장관이 써도 됩니까?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예산회계 원칙에 이게 맞는 거예요? 저도 자치단체장도 해 보고 대통령실에도 근무해보고 했는데 기관장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이잖아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자문위원회잖아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예, 자문위원회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기관장이 따로 본인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자기 활동은 자기가 하도록 법에 다 되어 있잖아요, 직무에 맞게?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자문위원이 아무도 참석을 안한 경우에, 앞에도 보니까 장관의 업무추진비처럼 사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예산 구조 속에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관께서 새로운 통일담론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그 예산을 좀 쓰게 됐고요. 물론 미래기획위원들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일부 관련이 되어 이것을 쓸 수 있게끔……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전문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전문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예산을 세울 때 위원회가 활용하라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장관은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지적하신 부분에 그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산 집행이 잘못됐으면 이것은 감사받아야 될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불법 집행이잖아요. 아닙니까?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기획위원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 것이 아니어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문가 네트워크가……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이·전용한 것도 아니지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필요하면 이용이나 전용을 해야 될 텐데 이용·전용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이·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 안 되는 돈을 쓴 거지요, 장관이?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아니, 장관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통일미래기획과 관련된 의견 수렴 차원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장관이 자기 직무에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을 직접 자기가 대행, 대신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사비나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본인이 일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돈을 거기다 쓰면 어떡해요? 이것은 명백하게 예산회계법 위반 같은데, 어떻습니까?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큰 틀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라는 제목 밑의 세부내역으로 들어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이 그런 취지에 부합한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정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징계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재정 위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오늘도 언론사에서 다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수요포럼, 통일이 있는 저녁, 이 간담회 보면 딱 한 차례 10명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7명 인원에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대부분 롯데호텔, 코리아나호텔, 달개비, 흔히 국민이 생각하는 고가의 식사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경비에 대해서 경비의 적정성, 굳이 이런 대화를 통해 담론을 형성해가는 과정과 틀이 이 방식밖에 없었나 하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번 보태 봤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국정감사 때 똑같이 다루게 될 테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의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감사나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이것은 일단 맨 뒤에 다시 논의를 조금 합시다. 이것 지금 11번하고 뒤에 앞뒤로 되어 있는, 아까 10번은 폐지하겠다고 절차를 한다니까 그렇다 치는데, 11번은 다시 별도…… 저도 좀 더 생각을 해 볼 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는 게 맞는지요.

나머지 또 의견 주십시오.

○**차지호 위원** 10번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상당 부분 기능들이 겹쳐지는데 그러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할 때 기존 정책자문위원회에 있지 않은 기능들이 있나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에 추가될 기능들이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무슨 말씀인지 잘……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사실상 정책자문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이 겹치는데 겹치지 않은 기능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좀 다르게 통일 미래의 전략 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기능들의 일부를 정책자문위원회에 둘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 없이 그냥 폐지되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일단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10번의 밑에 보면 이게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이것을 차관님께서 승인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얘기하신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없애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신임 장관님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개선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부대의견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담당 공무원에 주의를 줄 것’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이것은……

○**윤후덕 위원** 8·15 통일독트린을 추진한 담당 공무원에 주의를 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기록을 해 버리면 이것을 차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승인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 줄 것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년 전에 그때 장관이 그때 대통령하고 8·15 통일독트린이라는 것을 8·15 경축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어서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한 것인지 그 경위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산에서 이렇게 아예 적시를 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결산심사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은 인사를 가지고 내부에서 징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결산심사에서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좀 과하게 표현이 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관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이건 뺍시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 그러면 통일부 내에서, 조직 내에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차관님, 11번하고 14번하고 관련성 없는 사업이기는 한데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 11번의 미래기획위원회, 어쨌든 정식 회의도 아닌데 장관만이 참석·주재하는데 여러 회합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다, 부적절하다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14번에 보니까 ‘주요 사업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높고 단독 응찰로

인해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11번에 있는 여기에 참여하는 인사들과 단독 응찰로 인해서 용역이 집중되고 있는 곳의 관련 인사들이 혹시 중복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중복이 되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일상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 업무 자체가 중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단기적인 정책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소규모 액수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특정 주체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가 이런 것들이 전직 장관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는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통일부차관 김남중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일정하게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또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관련돼서도 한번 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1번 이것만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정리한 것 중에 1번 같은 경우는 부대의견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뒤에 부대의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팬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부대의견으로 돌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고객만족도 지표를 포함해서 성과지표 체계화 문제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인데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번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이지만 1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회계검사와 관련된 일관된 지침이 없다는 것,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 문제가 그러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에서도 논란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즉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저는 11번 이것은 시정이 아니고 정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변상 이렇게 가기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정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후덕 위원 아니올시다. 이게 왜 정계예요, 정계?

○소위원장 김영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위원님이 원판을 시정으로 했는데 그걸 왜 올려요? 내리는 것까지는 해도.

○통일부차관 김남중 저희가 예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해당 위원회는 없애는 걸로 결정을 했다니까 그걸로 양해해 주

시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시정으로 하고.

국정감사 때도 기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나중에 자료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전문위원 18번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제가 13번을 얘기를……

○**전문위원 김사우** 소위원장님, 13번 정리를……

○**소위원장 김영배** 10번의 밑에 있는 시정요구사항 중에 ‘통일부는 담당 공무원에 주의를 줄 것’ 이것은 빼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요.

13번?

○**전문위원 김사우** 예.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재정 위원님.

○**통일부차관 김남중** 13번 이 부분은 금년 중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의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요. 주의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리고 15번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차지호 위원** 15번에 위성정보센터 운영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위성정보센터라는 게 위성영상 구독이나 아니면 기존 촬영영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것들보다 사실 있는 확보한 이미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가 꽤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전체 예산들 중의 상당수가 구매 비용으로 쓰이고 분석에 대해서 좀 제한적으로 쓰인 걸 보면, 제가 정확하게 분석 방법을 알지는 못해도 유추해보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성사진이라는 것은 지금은 예전의 야간사진뿐만 아니라 AI가 트레이닝이 돼서 낮 위성사진들을 그전 사진과 비교해서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패턴들이 정교하게 추출이 되는 시기인데 그런 면에…… 그러니까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많은 정책적 의미들을 정교하게 뽑아낼 수 있는 부분에는 예산이 거의 제대로 가지 않은 것 보면 그런 방법들이 아직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실 때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에 더해서, 기존 인력들이 이걸 보는 게 아니고 AI라든지 몇 가지 지금 검증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초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라는 게 활용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릴게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석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AI 관련된 것들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그리고 또 16번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주의냐, 제도개선이냐?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것은 고양시 쪽에서 부지 변경 요청이 있어 가지고 착공이 좀 지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맞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거론이 됐었어요.

○윤후덕 위원 제도개선 합시다, 제도개선.

○소위원장 김영배 예, 제도개선으로 이것은…… 그러시지요.

○윤후덕 위원 이제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은 관련 서면이 철회되었습니다. 생략드리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일반회계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소요 파악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주의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소요 파악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둘째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영상 등 홍보·교육용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사실을과장·왜곡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9번입니다.

일반회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0번 일반회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계속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영상, 북한인권보고서 제작 부적정 등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통일부는 국회의 승인 없는 신규 사업 추진 및 이로 인한 잣은 세목조정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둘째 통일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간물 종류 등 충실한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를 정규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할 것이고, 셋째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주기 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21번 일반회계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관련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재단이 조속히 출범되어 예산집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출범 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2번입니다.

일반회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관련 사업입니다.

당초 편성 목적 외 소송경비 집행 부적정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

은 제도개선입니다.

23번 일반회계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계속입니다.

집행부진 부적정 및 실제 추진 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발굴 필요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사업의 예산집행 부진 및 변경집행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번 일반회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명시 등 사전 검증체계 강화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째,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 자부담 비율 및 규모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사전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자부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및 사후 확인을 병행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둘째 통일부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등 문제 단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25번 일반회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계속입니다.

민화협, 민통 등 국고보조금 지정 지원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 두 단체에 지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6번 일반회계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념관 운영 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에서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실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27번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에 없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전용을 통한 추진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대외적 파급력과 정책적 의미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과 주의입니다.

28번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 프로그램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새로운 정책 대상자들에게 제도개선 내용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동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국내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9번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계속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취업·창업 대책 모색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통일부는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대책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취업·창업 대책 및 생계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0번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계속입니다.

남북하나재단 운영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 분석 후 예산편성 필요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째, 향후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사업의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둘째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결산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말 정부출연금 교부 시 그 집행 가능성을 살펴 교부액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1번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입니다.

정착금 지급 관련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및 향후 추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예산 집행 추세를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2번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하나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실화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하나원 필수 공공요금의 경우 가격 변동과 집행 실적을 사전에 면밀히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의견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남중 24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앞으로 자부담 기준 마련을 해서 사업 참여 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개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7월 14일인데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게 24년 5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필요 예산을 조정했다는 점 때문에 시정보다는 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지호 위원 23번 질문 좀 할게요.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으로 예산이 1억 5400만 원이 배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인도지원 정책개발, 실제 국외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세우는 것은 2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밑에 부 자체 평가에서 나와 있듯이 통일부에서 북한주민 인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그래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인도

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2200만 원으로 파악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마저도 불용하고 19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아니면 그 안에서 데이터를 종합하는 과정들이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길래 이 예산마저도 불용이 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차지호 위원 인도적 위기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이랑 좀 구분을 해 주시지요,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인도적 상황 부분인데 인도적 상황 관련해서 저희들이 북한 정세 분석이라든가 나머지 부분 같은 것들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이 국경 봉쇄 같은 것도 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국제기구도 인력이 복귀를 하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미집행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최근에 대해서 가장 위기 상황이 심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들은 극히 제한돼 있었고 제한된 예산마저도 다 불용,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하는, 집행률이 100%도 차지 못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차관님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하셨다고 하면 어떤 예산으로 확보했는지를 저희한테 조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재의 판단과 그 근거가 되는 연구들 혹은 실태 조사들이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행률도 알려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또 다른 게 없으시면 아까 24번을 제도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27번 이것도 주의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렇게 국가기념일이나 중간에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은 역시 굉장히 사실 이게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주의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이 33번부터지요?

○전문위원 김사우 예.

○윤후덕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25번 민화협과 민통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정해서 내년 예산에 일정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화협과 민통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보수든 진보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자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북한과 합동으로 사업 등을 많이 했던 그런 역량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재작년부터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정해 주지를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간신히 1억 2000만 원 이런 정도밖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그전만큼, 2022년 2021년 그 정도 수준만큼의 국고지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민화협하고 민통은 대표적인 통일 민간단체이고 약간 연합적인 단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단체하고 좀 다른 경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26년 예산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고요 결과가 나오게 좀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민화협 보조금 관련해서는 2023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조금 사용 위반이 적발돼서 2024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이 아닌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제가 그 부분을……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감사원, 국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사용의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민간단체들에게 고루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제가 들고 있는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렇게 써 있지 않은데요.

말씀은 알겠고, 하여튼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일부가 예산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제가 더 과악하고 그리고 다음번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십시오.

○**차지호 위원** 28·29번 관련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일단 북한이탈주민의 대학 진학률 같은 경우는 한국의 평균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지점은 최근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급감했고 급감한 비율에 대비해서 직업 관련된 지원하는 인력들이나 학업 관련된 인력들의 숫자는 사실 현저히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많은 인력들에 비해서.

그랬을 때 저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새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률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지 그리고 취업률 자체에 대한 혹은 새로 한국에 정착한 아이들의 진학률 관련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낮거나 아니면 높게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 체계 속에 있는 지원 인력의 비와 실제 새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비는 훨씬 더 지원 인력이 많아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새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한 명당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는 훨씬 늘어났거든요. 예전에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에 비해서 관련된 인력 규모가 현저히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주민 숫자는 한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지.

여기에서 대해서 데이터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제도개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종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더 없으시지요? 32번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33번부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33번 일반회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통일부는 신규 예산편성 시 새로운 정책 대상 발굴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소극적·편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 주의, 제도개선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일반회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계속입니다.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현장 위주 프로그램 운영 필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통일정책지도자과정 현장 방문 및 시찰 일정이 본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에 맞도록 현장 위주로 진행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5번 일반회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계속입니다.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 전용 지양 필요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통일부는 예산 수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용을 통한 집행을 최소화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6번 일반회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집행 가능성에 담보되지 않은 예산편성 지양 필요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는 한정된 국가예산이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37번은 관련 서면이 철회되어 생략드리겠습니다.

38번 남북협력기금 경협기반 사업입니다.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상 손실 유발 여부 등 조사 후 국회 보고 필요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일부 및 예산 당국의 소극행정 등으로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점은 없는지 여부 및 민간기업에 부당하게 소송 수행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징계와 주의입니다.

39번 남북협력기금 DMZ 평화적 이용 사업입니다.

관행적 예산 과다 편성 후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통일부는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관행적 예

산편성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40번 남북협력기금 DMZ 평화적 이용 사업입니다.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등 마련 필요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세 가지인데 첫째,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장비·시설 등 유지비용 최소화 방안 및 대체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이고, 둘째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이며, 셋째 장기간 지연·불용되는 사업은 단계별 점검·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부대의견 2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연번 1번 통일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정책협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산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부대의견은 채택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2번 통일부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러시아 통일주재관 직위 복원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33번입니다.

33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 감액이 돼 가지고 계획 조정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고요. 이게 3월 달에 학교 학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내역 변경을 한 사안입니다.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쪽으로 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6번입니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제도를 개편해 가지고 QR 방식으로 응답 인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QR 방식을 처음 채택하다 보니까 충분한 응답 인원이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용역비를 더 이상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부분입니다.

38번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기도 한데요, 사실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2008년도에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초기에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2007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기금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서 기금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마지막에 교추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집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것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 현대 쪽에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저희가 이 이후에 교추협에다 안건을 상정하고 이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해결을 하지 못했

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징계까지 말씀 있는데 주의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 수용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차관님, 33번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돼서 어쨌든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인데 이걸 학교 통일교육으로만 제한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사업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 관련해서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걱정이 있냐 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남북의 화해 협력이나 평화적 교류, 공동번영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보다는 대단히 반통일적이고 남북대립적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들이나 정책들이 일관됐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청소년들, 지금 졸업한 청년들일 수도 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과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올바른 남북관계, 평화적 관계, 공동번영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겠는가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백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오히려 대립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상대를 꺾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까지도 많이 확산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남북협력기금 DMZ의 평화적 이용 관련돼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정책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청년 세대한테 물어보면 통일부에 대해서 올드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젊은 청년 세대들 중에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주에 가니까 DMZ에 평화의 숲을 조성해서 하는 젊은 여성 청년도 굉장히 활발하게, 통일부에서도 여기에 방문을 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산림청도 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고성의 DMZ에 평화의 길을 조성한 데를 젊은 청년 세대들이 공정여행으로 해서 청년들이 거기를 걸으면서 남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청년들끼리 이야기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백기로 인해서 올바른 남북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 공세적인,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져 봤으면, 그래서 이 결산 기회에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차관님께서 주도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결산자료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교육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청소년 기본법상 9세에서 24세하고 학생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도 있을 뿐만 아니고 청년, 청소년 했을 때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 법이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엔에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24세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유엔 것을 근거로 만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군대에는…… 청소년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기본법상, 그렇지요?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대부분 군인 아닙니까,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군인들이 청소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게 학생 그러면 학생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있고 대안학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 그러면 교육부가 관할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씩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학교 통일교육 강화라고 기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학교로 바꾼 것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무식한 행위예요, 정책상으로 기본을 잘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다 싶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아까 급하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조직화돼 있는 단위니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해서 급하게 전용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할 때 이 학교 대상을, 당연히 학교는 조직화돼 있는 단위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도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특정 연령대를 이야기하게 되면 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청년도 보면 청년기본법상 연령이 있고요. 우리나라 법상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법률에 보면 39세 미만도 청년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29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이 청년이라는 규정도 법에 따라 다 달립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도 우리나라는 노인이 몇 살부터 몇 살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쓰실 때 정확하게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그냥 학교로 봤기 때문에 문제다라고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용, 청소년 기본법상 이렇게 있는데 그걸 알고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분의 정확한 취지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이 38항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차관님 설명하신 것 보면 교추협 했는데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다 중지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기재부에다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기재부가 돈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부가 바뀌면서 기금을 그동안 오남용을, 오남용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조금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인수위 때, 저희들 그 예산이 나갔어야 되는데 인수위 때 기금을 사용하지 말라

는 지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났고 남북관계가 약간 정체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추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기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남북관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경과된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바람에 기재부도 약간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지 못했거든요.

○김건 위원 그런데 문제인 정부에서 5년 동안은 남북관계가 괜찮았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래서 그사이에 정부 바뀌고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몇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처리하기가,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것들을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을 계속 줘 가지고 몇 차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사실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영어로 키킹 더 캔 다운 더 로드(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하다가 마지막에 이것 하는 사람 징계받는 것 다 알고 안 하고 자꾸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지불했으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8억 줘야 되는데 자연금을 50억 넘게 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그사이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았는데 이것은 기재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든 통일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든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이 개성공단 그때 그 사업.....

○통일부차관 김남중 철도·도로 사업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철도·도로 그거였나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하여튼 기재부 쪽하고 통일부 쪽하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했고 재정적인 손실이 분명히 발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행이라든가 제도적인 미비점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특정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결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개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건 위원 상식적으로 일반 회사에서 38억 원금 지급하면 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자까지 다 합쳐서 소송받아서 50억 내면 그 사람 잘리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그런데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이게 지금 차관님, 2016년 4월 이후에 협의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왜 이때부터지요? 그 전에는 협의가 이루어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때는 무엇 때문에 협의가 중단이 되었던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2016년 4월 이후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2016년 4월 이후에도 기재부 쪽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있었고.....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지금 발생한 시점이 아까 이천몇 년도라고 그랬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7년입니다, 2007년.

○소위원장 김영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노무현 정부 말년에 10·4선언하고 직후에 저희들이 철도·도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상황 속에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이……

○소위원장 김영배 원고가 소송을 시작한 게 몇 년도입니까?

○통일부차관 김남중 소송을 시작한 게 22년 3월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게 대법원 판결 난 게……

○통일부차관 김남중 1심 판결이 24년에 났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2년에 소송을 해서?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22년에 소송을 해 가지고 24년에 난 걸로……

○소위원장 김영배 1심이 나고, 대법원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상고 포기를 지금……

○소위원장 김영배 상고 포기했다고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상고 포기했습니다.

○이재정 위원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뭐였나요? 이행을 미룰 만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어서 항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다투어 봄 직한 나름의 사유가 있어서 미지급되었다면 또 인정할 이유가 있겠지만 어차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지급될 수밖에 없고 자연 배상금까지 예정된 경우라면 굳이 소송 절차를 계속 밟는다는 것 자체가 무용한 상황에서 그 판단을 하고도 밀어붙였다는 것은 과실이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소송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당초 이 지급을 미루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논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아직 파악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지금 통일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통일부가 잘못한 게 아니고 기재부가 안 줬다 그 말일 것 아니에요. 통일부가 돈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돈을 배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니까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 지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16년 이후로 중단됐다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징계를 받아야 되면 16년 이후로 중단을 시킨 게, 그러니까 중단했다는 것은 통일부가 그 뒤로는 지급해 달라고 기재부에다 요구 안 했다 그 뜻 같은데, 그러면 16년도 당시에 그것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4월 달 이후에도 계속적인, 여기 지금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공식·비공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대답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재정 위원 하기가 어렵다는데 사유가 뭐예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공식적으로 교추협에 올려서 이것들을 변상을 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김건 위원 공식적으로 교추협에 올려서 변상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기재부가.

○소위원장 김영배 뒤에 담당 국장 없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남북관계관리단장입니다.

당시 통일부하고 현대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사업들이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까 계약서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007년도 당시에?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그래서 기재부가 그 후에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게 재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효도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1심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승소했네요?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구두로 한 계약도 성사가 되는 것으로……

○윤후덕 위원 통일부가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당시에 조금 시급하게 진행되는 게 남북 공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현대가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구두로 한 건이 이것 말고도 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배상금을 집행한 게 언제예요? 2024년인 모양이지요?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24년 12월에 지급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12월?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소위원장 김영배 상고 포기하고 나서?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소위원장 김영배 24년 12월이라 함은 계엄 나고 나서네?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그렇습니다. 24년 12월 19일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상고 포기 날짜가 언제예요?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상고 포기는 24년,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24년 7월입니다.

○이재정 위원 상소 포기. 항고 포기, 그러니까 상소라고 합니다. 항고와 상고를 포함한 게 상소입니다. 상소 포기.

○소위원장 김영배 상소 포기.

○이재정 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차관님은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항변할 만큼의, 국가로서도 소멸시효를 주장을 했다든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공사내역에 다통 지점이 있었다든지 한다면 저는 지금 이것을 미룬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다만 당초에 계약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때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참작할 만한 나름의 사정, 다른 계약이 이미 선행되고 있었고 거기에서 부가계약 방식으로 된다든지 향후 정산을 전제로 했다든지 그런 사정이 존재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해요. 이것은 좀 상황을 판단해 봐야 아는 거지 막연히 지연배상금이, 손해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1심 판결문 국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싶습니다.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이게 참 의아한 것은 2024년도 7월에 항소 포기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하다는데 국회가 전혀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한테 업무보고도 안 되었나? 정기국회 때도 보고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렇지요?

○**윤후덕 위원** 이게 구두로 계약한 게 2007년이라고 그랬지요? 2007년.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몇 월 달에?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2007년 약 한 12월경일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12월에 현대건설하고?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정상회담 하고 총리회담하면서 철도·도로 공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게 착공을 한 것이 12월 정도……

○**윤후덕 위원** 오래된 얘기네요.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이미 기 진행이 된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계 주체까지는 당장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게 이미 예산도 집행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해놓고 부대의견을 달지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상세한 내역하고……

○**김건 위원**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국가가 공무원이 계약을 하는데 구두로 한다는 게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그 당시에 그래 놓으니까 이게 소송까지 온 거지요.

○**이재정 위원** 살펴야 한다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정계시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었다는 상황 자체에 현재의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판결문을 한번 확인을 해 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1심 판결문을 행정실에 보고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줘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남북관계관리단장 소봉석**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건 연구를 해 봄야겠네요.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부대의견 달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 보고, 어차피 한번 불거진 문제니까 국정감사 때에도 만약에 의견이 계속 있으시다면 결국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보고를 받고 다시 점검하는 걸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국감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김기웅 위원** 2007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소위원장 김영배** 2008년에 무효시키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김기웅 위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2008년에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안 한 상태에서 이쪽은 돈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있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서 작년에 소송해서 1심에서

지니까 줬다 이거잖아요.

○**이재정 위원** 계속 다툼이 있으니까 임의지급을 하면 그것도 배임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미루신 것 같아요.

○**김기웅 위원** 그 기간 동안에, 2007년에 해 놓고 사업을 안 한 배경부터 또 따져 가지고 해야 되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세 분 지나갔지요? 네 명 지나갔나?

○**이재정 위원** 그때 당시에 과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징계시효도 지나갔고……

○**소위원장 김영배** 대통령들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방치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재정 위원** 징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네요.

○**소위원장 김영배**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 가지고 김건 위원님하고 한정애 위원님한테 우선 보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논의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남중** 예.

○**소위원장 김영배** 나머지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부대의견 두 번째 의견 러시아 통일주재관 복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려십니까?

○**이재정 위원** 노력한다.

○**윤후덕 위원** 노력합시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면 이것은 그런 정도로 해 놓고.

지금까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33번을 구체적으로 수위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아까 말씀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는데요 이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 드리고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학생·청소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상 사업을 할 때. 그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그리고 38번은 결산에서 지적하지 않으시는 걸로 아예 삭제.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김사우** 그리고 36번 수위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유형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36번 만족도 이것은 앞으로 더 편성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하시지요.

○**전문위원 김사우**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이 1건, 주의가 11건, 제도개선이 25건 그리고 부대의견이 2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중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평통 남았는데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동승철 민주평통 사무차장 출석하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통일부 결산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평통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 중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결산 관련하여서는 서면으로 6건의 지적 및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소위자료로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 편의상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민주평통은 예산심의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재정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할 것, 둘째 민주평통은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약화시켜 운영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2번 일반회계 총괄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수행 방식 전환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사업수행 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번 일반회계 자문회의 운영에서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자문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국내 지역회의 프로그램 개선, 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 일정 조기 확정 및 안내 등 국내 지역회의의 참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4번 일반회계 자문회의 운영에서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

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집행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5번 일반회계 자문위원 역량강화에서 동일한 성격의 경비 혼용 집행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불가피한 소규모의 긴급한 소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행되지 아니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6번 일반회계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기존 통일골든벨 사업 방식 재검토 및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통일공감 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민주평통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현재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사업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사무차장 동승철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의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을 했고요. 그 개정된 운영규정, 현행화된 운영규정에 따라서 내부통제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사업수행 방식 전환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수용 아닌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아, 그럴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그러면 2번은 그대로 수용입니다.

3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이렇게 두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 회기를 고려해서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4번 국내 지역회의 임차료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 해소 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료 과다편성과 관련해서는 2026년도 예산에 좀 현실화를 시키는 예산으로 3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공공시설 이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견은 제도개선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5번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5번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주의하고 제도개선 이렇게 두 가지 시정요구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주의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 기존 통일골든벨 사업 방식 재검토 및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통일공감 사업 모색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일골든벨이 청소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해외에서는 통일골든벨이 해를 거듭하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통일골든벨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형됐는데요. 작년서부터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받아 주셔서 저희들 불수용 의견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의견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1번은 제도개선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출석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과연 평통에 계속 이렇게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이렇게 돼 있는 법적 조항은 없고요. 단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선출한 인사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후보자가 되도록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또 대행기관인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저희가 통일운동을 같이 연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저도 구청장 할 때 지역에서 해 보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평통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평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행기관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평통이 운영이 안 되니까 당연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의원들은 자기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자기가 평통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통의 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의 존재보다는 이 지역의 평

통 조직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약간 평통 위원과는 다른 지위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갈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조금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문위원은 아니지만 늘 평통회의에 참석을 함께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혹은 아니면 위원으로 할 거면 특정 조건을 갖추든가. 그래서 예를 들면 참석률을 보통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좀 잡아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텐데 실제로는 평통회의 할 때 거의 안 나옵니다, 지방의원들은.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은 평통이 좀 약간 무책임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방의 돈을 우리가 못 도와주니 알아서들 조달하시고 운영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 의원들은 안 나오면 나중에 제재 혹은 재위촉할 때 기준이 있지 않나요? 지방의원은 그게 없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저희가 한번……

○소위원장 김영배 이게 약간 어긋지단 말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평통 위원으로서 참여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해 구성이 시작되는 해입니다만 ‘실제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내 드려요. 그러면 사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활동 의지라든지 아니면 바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 칠팔십 %는 서명을 해 주시는데 지역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이분들의 참여를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님들만 별도로 연수를 기획해서 그분들이 평통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도 하고……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현재 평통 전체 자문위원 숫자가 몇 명이지요? 그때그때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22기인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지금 현재 21기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8월 말까지……

○소위원장 김영배 21기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21기는 2만 1984명이고요.

○소위원장 김영배 많이 늘었네.

그런데 그중에 한 4000명 이상이 지금 지방의원님들일 것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지방의원이 3800명 정도이신데요. 평통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3500명이 좀 안 되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2만 1000명 중에 4000명이 조금 안 되는 3500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3500명 조금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잖아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이 평통 자문위원 빠졌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도 많고, 특히 해외 같은 데는 더 그렇고. 이 갈등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이걸 구조적으로 그냥 두는 게 타당하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일단 제도개선으로 놓을 테니까 제도개선 방안, 지금 사무차장님 오셨으니까 대통령한테 방침서 받으실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소위원장 김영배 방침서 받기 전에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국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 본예산이지요, 우리가 곧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는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안 담겨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할 때. 그것을 대통령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정무수석실하고 통일비서관실하고 그런 쪽이 유관기관일 테니까 거기에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정무수석실에서는 오히려 관련 정당에게, 정당 지도부한테 이런 사안을 알리고 평통에서 이것은 책임 있게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책을 세워 달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담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이상만 포함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우리 법적 근거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건 없지만 사무처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의 역할이 있긴 한데요. 이게 또 여러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지침서에.....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정당 지도부하고 함께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자문기구가 이렇게 엉성하게 18% 참석하는 것을 가만두고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특정 상임위원장이든 이렇게 이상을 넣는 걸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자기 몫이 있잖아요. 자기 몫에서 반영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최혁진 위원 3번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평균 참석률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상임위 회의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지만 민주평통에 사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극우적 시작이라든가 뉴라이트 역사관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거

의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주장하는 분들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민주평통 조직의 목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람들의 참여를 저해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새로 위원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보면 청년위원 참석률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지금 청년 세대의 통일관이라든가 남북관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청년 문화에 걸맞은 민주평통의 어떤 조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청년 세대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노력들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차장님께서는 6번을 삭제해 줬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는 6번을 삭제할 게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아까 통일부 할 때도 그랬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어쨌든 청소년은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일골든벨 사업 이게 호응이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학교 찾아가는 사업들이 되는 거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통일공감 사업들을 좀 폭넓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 청소년을 학교 청소년으로 국한하지 말고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는, 좀 더 넓게 볼 수 있을지라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려고 하면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과제로 담아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청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 기수마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22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22기에는 청년 참여 공모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아직 대통령님의 재가가 없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청년 참여를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한 1500명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청소년통일공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든벨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통일원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 영역을 넓히는 데 너무 한계가 많이 드러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더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할게요.

1번은 아까 얘기했고, 2번도 제도개선, 3번도 제도개선하고 이것은 따로 별도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별도 보고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번 제도개선, 5번은 주의, 6번은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이것은 아까 찾아가는 원정대 그런 사업 등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또 새로 사무처장 오셨으니까 업무계획 새로 세우시는 중이니까요 이것 제도를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걸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평통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사우 심사 결과 제도개선 5건, 주의 1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소위원장 김영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민주평통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와 소위원회 심사보고 작성 등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승철 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들, 행정실 직원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 건 김기웅 김영배 윤후덕 이재정 차지호 최혁진

○ 출장 위원(1인)

조정식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조정기획관 문인석

개발협력국장 박종한

기획재정담당관 김종민

한국국제협력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우경하

한·아프리카재단

상근이사 김운안

통일부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직무대리 윤민호

국제협력국장직무대행 고원형
북한정보협력관 추석용
남북관계관리단
단장 소봉석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고영환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
소장 이승신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동승철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